



공공기관 공통사규 개선 설명회

2010. 11. 1.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설명회 개요

□ 목 적

- 부패영향평가 제도 및 평가기준 등 소개
- 공통사규 개선과제 추진방안 논의
-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공통사규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 교육 개요

- 일시 : 2010. 11. 1.(월) 14:00 ~ 16:30
- 장소 : 현대빌딩 대강당(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지하 2층)
- 참가대상 기관 및 대상자
 - 기타 공직유관단체(547개) 사규관리 담당자 및 공통사규(인사, 감사, 계약, 기관운영비) 개선과제 추진 담당자

□ 주요내용

- 부패영향평가 제도 및 평가항목 소개
- 공통사규 개선과제 추진방안 설명
- 부패영향평가 사례분석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노하우 공유
- 부패영향평가 제도 구축 및 운영 관련 의견수렴

□ 진행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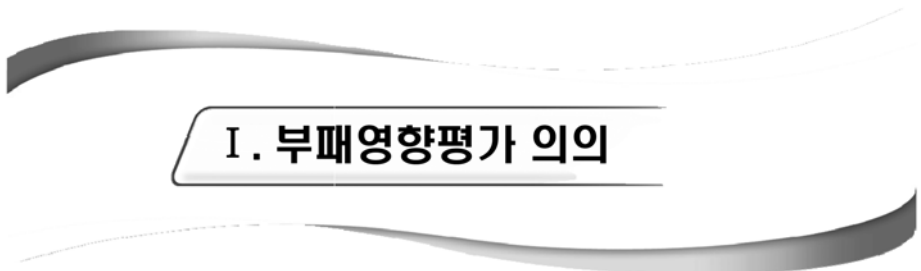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진행본부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부패방지국장
14:10~14:30	20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최진경 주무관
14:30~15:00	30	공통사규 개선과제 추진방안 설명(Ⅰ) (인사 및 계약 규정)	최진경 주무관
15:00~15:15	15	Coffee Break	—
15:15~15:45	30	공통사규 개선과제 추진방안 설명(Ⅱ) (기관운영비 및 감사 규정)	최진경 주무관
15:45~16:00	15	부패영향평가 기법·노하우 공유	최진경 주무관
16:00~16:30	3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부패영향분석과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2010. 11. 1

국 민 권 의 위 원 회



I. 부패영향평가 의의

가.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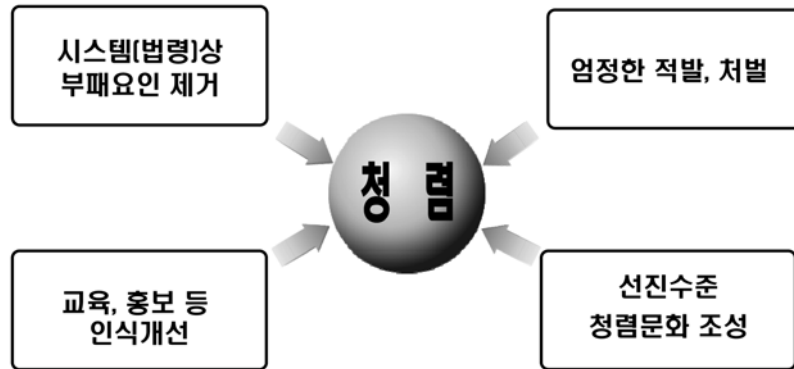
나. 부패발생 원인 : 부패인식도 조사결과(2008년)

(단위 : %)

항 목	일반 국민	공무원	기업인	여론 선도층	주한 외국인
관대한 처벌	24.1	12.9	18.0	21.0	14.5
부패관용 사회문화	23.0	19.6	25.0	28.4	34.5
정치 부패구조	17.4	35.6	13.4	11.0	12.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7.3	15.9	13.7	13.9	14.5
법/제도 · 불합리한 규제	17.0	15.3	29.3	24.7	18.5

- 일반국민 :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 공무원 :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 기업인 : 법/제도 · 불합리한 행정규제
- 여론선도층 · 외국인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다. 부패방지대책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 시스템[법령]상 부패요인 제거

라. 부패영향평가 개념 및 근거

개 념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법령 입안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거·정비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평가대상

- 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사규, 규정
- 제·개정 법령 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 현행법령도 평가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마. 부패영향평가 절차

- 소관부처 : 법령 제정, 개정안 입안
부패영향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권익위 평가의뢰
- 권익위 : 부패영향평가서 검토 => 개선의견, 폐지권고 등
- 법제처(법제심사), 규제개혁위(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의결

바.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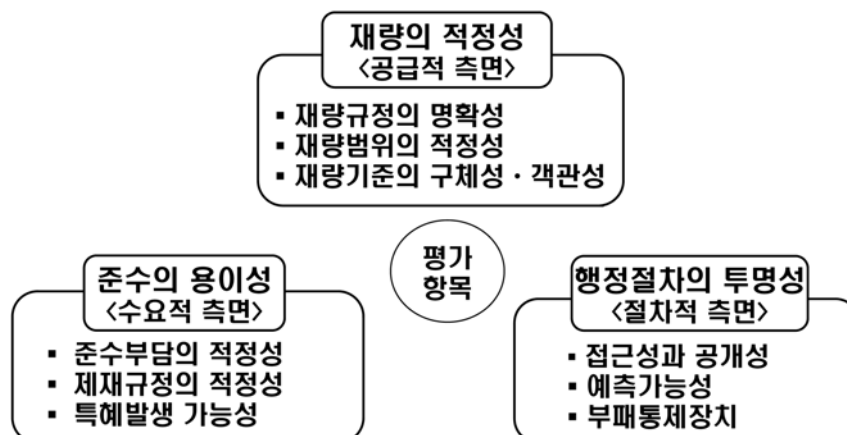
〈연도별 제·개정 법령 평가현황〉

[단위 : 개]

평가기간	평가 법령수	개선의견		원안동의 법령수
		법령수	개선의견수	
2006. 4~12월	609	119	359	490
2007년	1,168	259	737	909
2008년	1,368	269	496	1,099
2009년	1,394	229	508	1,165
2010. 6월	659	107	243	552
계	5,198	983	2,343	4,215

II . 부패영향평가 항목

가. 법령상 부패유발요인과 부패영향평가 항목



나. 부패영향평가 항목

● 공급요인 : 공무원 입장

- ▶ 업무처리 기준 및 방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은가?
- ▶ 법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곤란하지 아닌가?
- ▶ 담당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 수요요인 : 민원인·정책대상집단 입장

- ▶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이해관계자 등이 준수하기 어렵지 않은가?
- ▶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 특혜가 특정분야, 특정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절차요인

- ▶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비공개하는 것은 아닌가 ?
- ▶ 업무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되지 않은가 ?
- ▶ 부패를 통제하는 장치는 있는가?

〈예시〉 공급요인 : 불명확성

● 불명확성 → 불명확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량축소

- 불확정개념 : 필요한 경우, 상당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 경마, 경륜 등 수입금 집행 : 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버스 보조금 :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식품수입시 제출서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심의/의결위원회 위원 :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

● 예시 : 비위공직자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추상적인 규정 : 비위 고하, 고의 여부, 중과실 유무

<예시> 수요요인 : 처벌기준 비현실성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전화방) 단속 사례>

고발일시	결과	고발일시	결과
1차 [2001.9.4]	구약식	6차 [2007.3.27]	구약식(100만원)
2차 [2002.4.15]	구약식	7차 [2007.12.17]	구약식(150만원)
3차 [2003.12.31]	구약식	8차 [2008.6.18]	구약식(200만원)
4차 [2004.12.23]	구약식	9차 [2008. 11.7]	공소권 없음
5차 [2006.5.4]	구약식(50만원)	10차 [2009.6.5]	구약식(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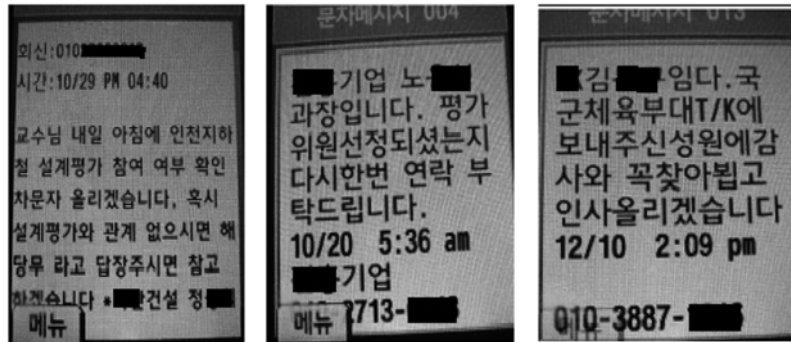
☞ 불법업소(전화방)에 대해 10년간 10차례 고발 → 영업 지속

<예시> 절차요인 : 정보공개 확대(2010년 평가사례)

-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업무추진비집행지침)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보조금법)
-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상황 공개(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마사회 수익금 지원 및 집행상황 공개(마사회법)
- 담배소매인 지정, 홈페이지 등 공개(담배사업법시행규칙)

〈예시〉 절차요인 : 부패통제장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턴키공사 관련 심사위원 로비사례〉



☞ 공사계약 심사위원에 대한 전사적 차원의 전방위 로비 관행

〈예시〉 절차요인 : 부패통제장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제고
 - 심의/의결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예: 과반수) 확대
 - 유착관계 형성 차단을 위한 위원 임기 및 장기연임 제한
 -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자격기준 구체화
- 위원 활동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장치 마련
 - 심의위원이 당해기관 발주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수주 제한
-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 강화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회의록의 원칙적인 공개

Ⅲ .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가. 부패영향평가 의의

의 의

-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규등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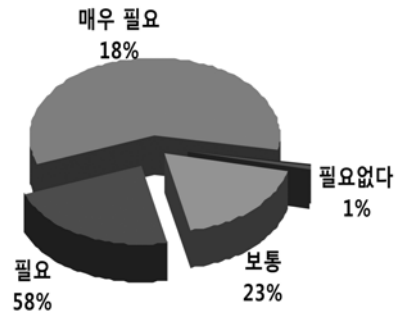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조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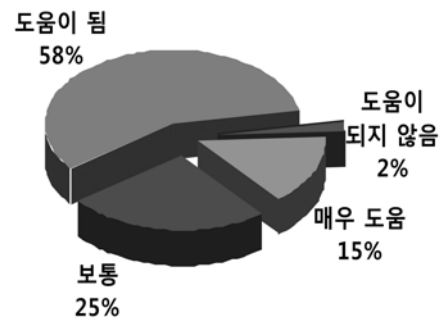
- 사규·정관, 지침, 요령 등 공직유관단체가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규정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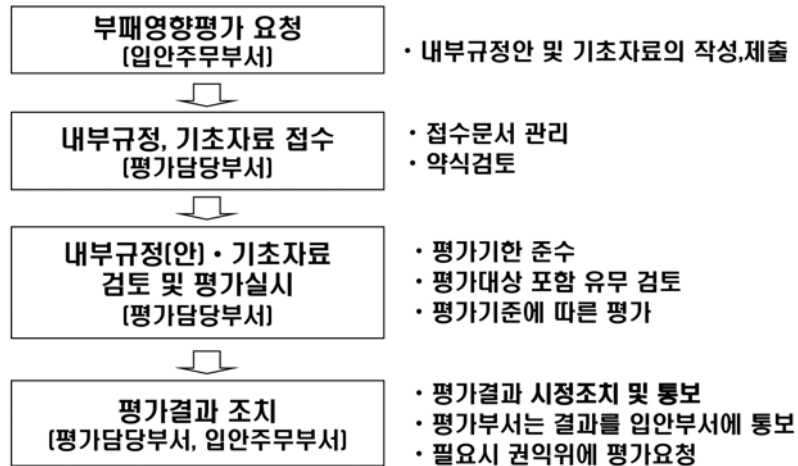
〈기관의 투명성 제고 기여도〉



나.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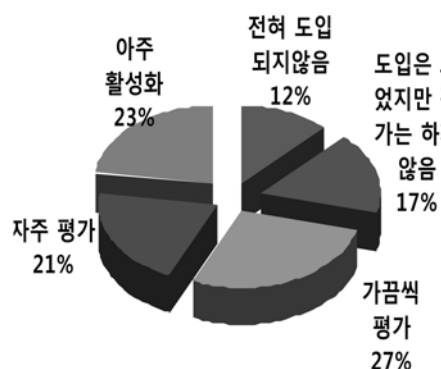
- 자율평가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요청에 의한 평가
 - 사규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 사규평가 컨설팅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권익위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다. 자율평가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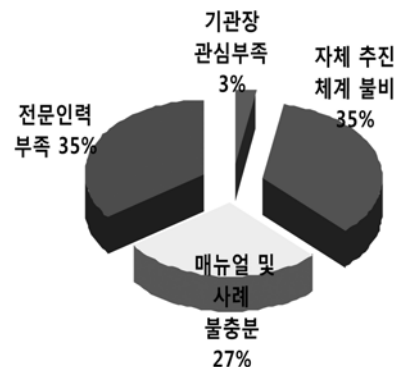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부패영향평가 추진 정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라. 법령과 사규 부패영향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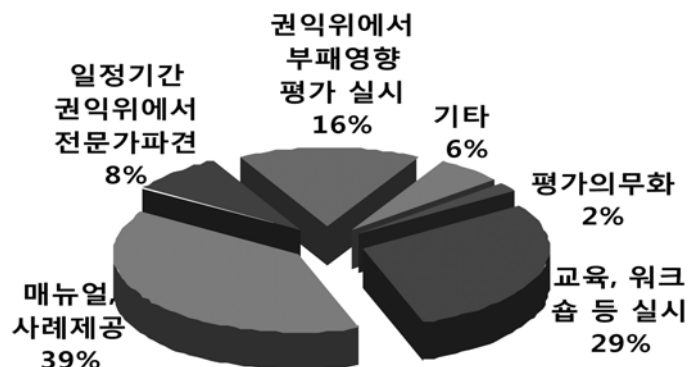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 추진시스템 비교〉

	법령 부패영향평가	사규 부패영향평가
소관기관	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
평가방법	입법시 평가 의무화	자율평가 원칙
평가주체	국민권익위원회	· 각 기관 사규담당부서 · 필요시 권익위 권고
평가항목	9개 항목	9개 항목

☞ 평가항목은 동일하나, 평가방법 · 주체에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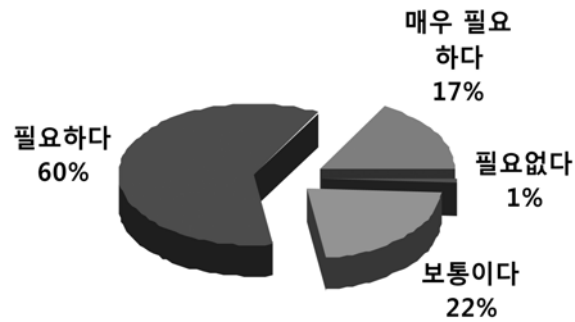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참조〉 102개 기관 부패영향평가 인식도조사

-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를 검토하여 개선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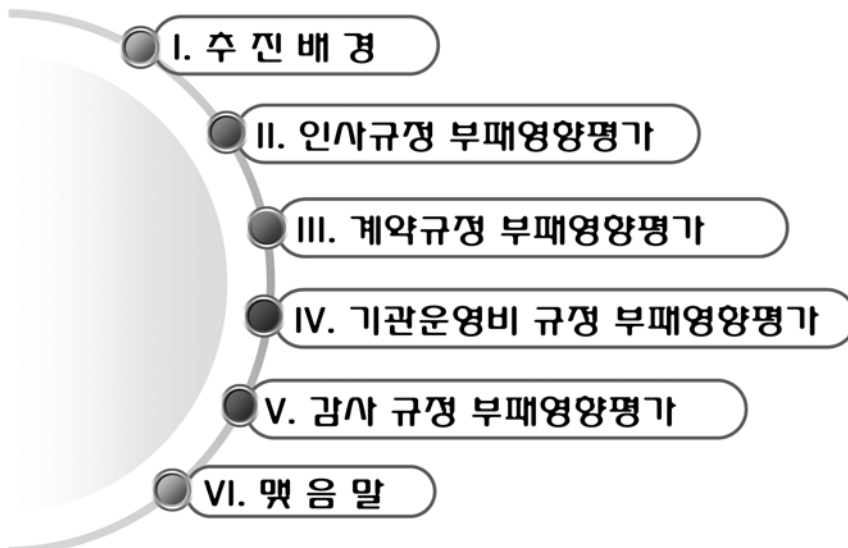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1)

－ 인사, 계약 규정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부패영향분석과)



I. 추진배경

- ❖ ISO26000 등 사회적 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자발성, 법 이상의 준수 노력, 지속적인 프로세스
- ❖ 공직유관단체의 지속적인 윤리·투명경영 노력
 - 제도화 위해 사규 정비 필요
 -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79개) 지원
- ❖ 인사·계약·기관운영비·감사 등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 공유

II. 인사규정 부패영향평가

▶ 인사업무 관련 부패 사례

▪ '08.11월[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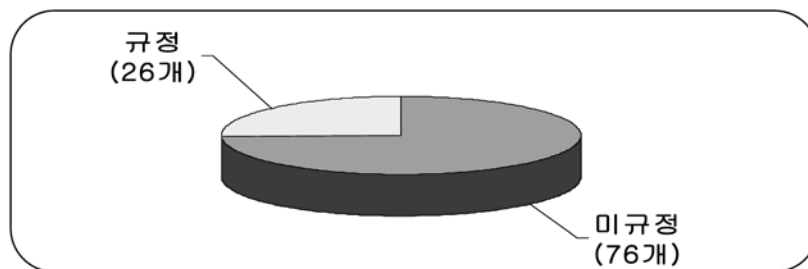
- '07년 12월 신규직원 채용 관련 점수 조작 혐의
: ○○기관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공사 간부 승진 청탁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 전 국회의원 장모씨 기소
- 인사상 혜택명목으로 41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 ○○공사 전 사장 구속 기소
- 직원승진 대가 및 채용 대가 뇌물수수 혐의
: ○○공단 전 이사장 구속 기소

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 문제점

- 특별채용 등 내부직원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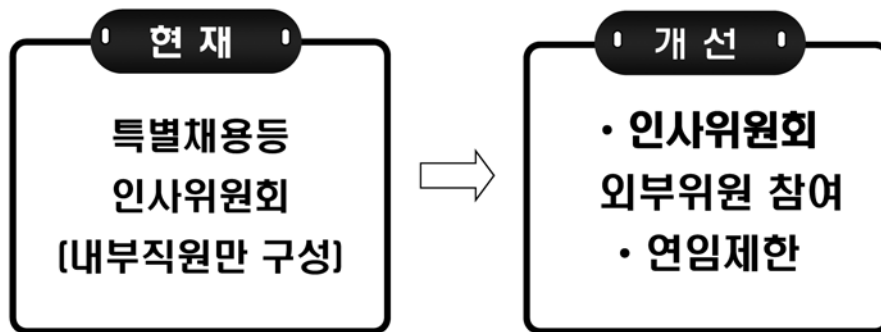


- ▶ 규정 기관 : 부산교통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 개선방안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유착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우수사례】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상임이사,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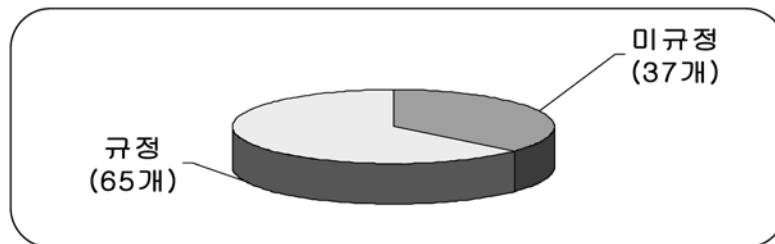
⑤ 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문제점

- 인사대상자 관련 이해관계자 인사과정 참여
→ 인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저하

〈인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업무 배제 현황〉



▶ 규정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개선방안

- 특별채용 등 인사업무 관련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